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자료

2025. 3. 19

전주송천초등학교

학부모 연수 자료

1. 반부패 청렴교육	1
2. 공교육정상화	4
3. 교육활동 보호	6
4.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10
5. 학교폭력 예방교육	12
6.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14
7. 아동학대 예방교육	16
8. 학생 도박 예방교육	18
9. 감염병 예방 교육	19
10.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20
11. 마약류 및 흡연 예방교육	23
12.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이해	25
13.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안내	26
14. 정보통신윤리교육	27
15. 학교 상담실 운영 안내	29
16. 학교 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	33
17.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35
18. 진로교육	38
19. 출결 관리 안내	39



반부패 청렴교육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청렴이란 무엇인가?

가. 전통적 의미

-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에 초점에 두고 사용되어 왔다.

나. 오늘날의 의미

- 오늘날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으로 법적 강제성과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다. 청렴교육

- 청렴교육은 청렴 성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반부패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위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행위 규범에 대한 교육이다.
- 부패는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돕는 행위를 말한다.
- 반부패교육은 청렴교육과 같은 뜻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교육
 -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돕는 도덕교육
 - 사회의 부패현상을 인식하는 의식개선교육
 - 부정부패 행동을 교정하는 교정교육

질문 있어요!

Q : 타인에게서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한 것은 부패행위 인가요?

A : YES.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이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수수 인가요?

A : YES.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은 받은 것입니다.

라. 전라북도교육청 청렴 정책의 비전과 목표



2 가정에서의 청렴교육이란?

가. 청렴습관

- 청렴한 생활 습관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6대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였을 때 길러지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청렴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다.
- 청렴과 관계된 6가지 덕목은 다음과 같다.

실천덕목	내용
치우지지 않는 공정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하는 것
내 몫을 다하는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
함께 지키는 약속	나와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과의 약속
욕심을 버리는 절제	물건이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끼는 것
진실을 위한 정직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으로 불의에 대항하는 용기도 포함
공공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나. 청렴과 가정의 관계

- ‘개인’의 청렴은 ‘가정’의 평화와 조직의 건강 그리고 ‘사회’발전의 공통된 요소이며 상호작용 속에서 청렴문화는 성장해 간다.
- ‘청렴문화의 성장’은 다시 사회적 기반 시설이자 자본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축소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국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준다.

3 청렴한 부모, 바른 자녀 만들기!

가. 참된 부모란?

다음의 글을 읽고 참된 부모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부모의 시작입니다.

- 공익광고 중에서 -

나. 부모는 자녀의 거울

- 자녀들의 1차적 동일시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언행이 바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부모가 정직하고 공평하고 땀 흘린 만큼 그 대가를 얻으려 할 때, 그 모습이 자녀에게 비춰져 자녀도 어릴 때부터 바른생활이 습관화 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공교육정상화법

- ◆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 3. 11. 제정, 2022. 7. 21. 개정

◆ 「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행정지도)

◆ 선행교육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 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Q&A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 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초6과 중1,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교육활동보호의 필요

교육활동보호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밑거름이 됩니다.

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때 수업의 질이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의 주목적은 안정적인 수업과 학습권의 보장입니다.

나. 배움과 실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면화·인격화하는 과정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교원은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선생님이 행복하면 학생이 행복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지도에 매진할 때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예]

1. 폭행상해: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멍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
2. 협박: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거나 말없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목을 겨누는 경우
3. 명예훼손: 다른 학부모들에게 ‘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과거 징계 사실을 유포한 경우
4. 모욕: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경우
5. 손괴: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학교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교사의 문서나 파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6. 성범죄: 휴대전화로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거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 수업 중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7. 불법정보 유통: 교원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한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 교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 1) 동·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또는 분쟁조정
- 2)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 | | | |
|------------|--------|-------------------------------|
| ① 학교에서의 봉사 |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④ 출석정지 |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⑦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 미적용) |

※ 위 조치 중 ③호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함(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 | | |
|------------------|----------------------------------|
|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위 조치 중 ②호 특별교육 미참여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제35조제1항)

3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가.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속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되는 바람직한 상호관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4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각 학교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 순서

- ① 전주송천초등학교 홈페이지 접속 → ② 【학교소개】 → ③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 ④ 【글쓰기 바로가기】 → ⑤ 【본인확인】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 ⑦ 【민원상담 내용 작성 및 등록】

□ 예약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에 접속 후 ② ~ ④번을 순서대로 클릭

② 학교소개

교직원인사말
교육방향
교가
학교연혁
학교상징
학교현황
교직원소개
오시는길
학교시설예약

③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홈 > 학교소개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이 코너는 귀 자녀 관련 교육적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곳입니다.

신청 내용은 학교에서 접수하여 유선 연락, 대면 상담 예약 또는 게시글로 답변해 드립니다.

신청시 요청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야 정식 접수되며 등록된 개인정보와 신청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글이나 인격상함이 허위인 경우에는 민원 내용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글쓰기 바로가기

내 글 확인하기

- ⑤번 본인 확인(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폰 인증 중 택 1) : 인증하기 클릭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홈 > 학교소개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본인확인

전라북도학교통합홈페이지는 온라인상에서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래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휴대폰인증
본인 휴대폰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아이핀인증
본인 아이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⑤ 인증하기

인증하기

- ⑥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의 체크 후 다음 클릭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홈 > 학교소개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필수) 5 동의

0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학부모 민원상담 신청 및 관리
 02. 필수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03. 선택수집항목 : 학생 성명, 학생 학년/반
 04.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 파기합니다.

다음 >

- ⑦번 민원상담 내용 입력 : 제목 , 휴대폰번호, 학생 성명·학년·반 입력 후 내용 입력

제목 (필수)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휴대폰번호 (필수)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없이 입력해주세요"/>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value="휴대폰번호를 입력해주세요.(숫자만 입력 가능)"/>
학생 성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학생 학년/반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청탁금지법의 이해

▶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적용대상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① 공직자 등(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 주요내용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사교·의례·부조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칙 등) ①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②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반사례

- 스승의 날에 학생(학부모)이 선생님(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학부모)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허용사례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꽃)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입니다.
-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등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됩니다.(동생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가)

2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 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3 불법찬조금 유형 및 사례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
-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교(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학교폭력예방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 마.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3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 가.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나. 폭력피해가 우려되는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하도록 합니다.
-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 마.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4 학교폭력 신고 방법

- (교내 신고) 전화 또는 직접 신고, 설문조사, 홈페이지
- (교외 신고) 112경찰청, 117 신고센터(문자신고는 #0117), 학교전담경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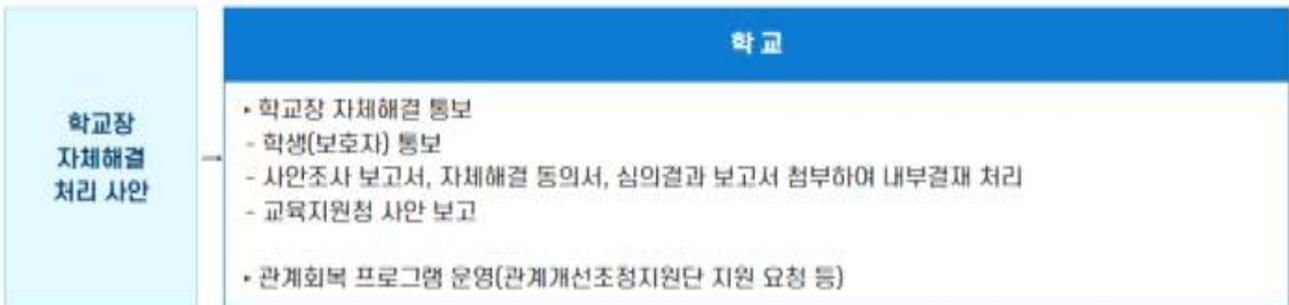
5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 해당 절차는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담기구(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이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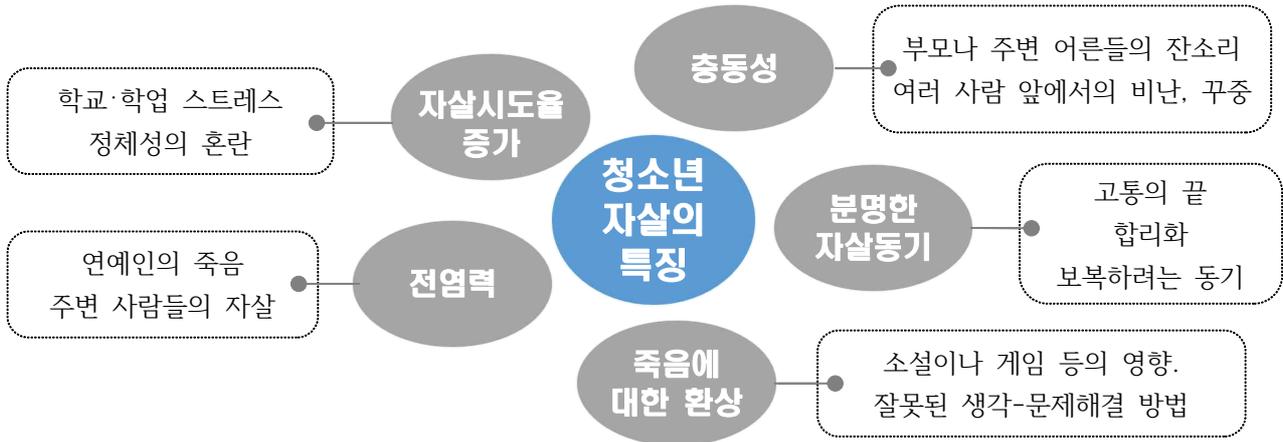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생활에 힘을 싣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2 청소년 자살예고 징후

행동 신호

-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언어 신호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텐데...
-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 사라져 줄게
- 멀리 떠나고 싶다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날아가버리고 싶다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기타 신호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 감정기복이 심해짐
- 식욕과 수면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3 청소년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가. 자살예방 대처방법(가정)

-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방법 등).
-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은 하지마세요.
- 부모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은 자녀를 향해 주세요).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여러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 곁에 머물러 주세요(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세요(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7계명

-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
-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www.suicideprevention.or.kr)
-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www.kyci.or.kr)
- ☞ 문자상담 「다 들어줄 개」 (☎1661-5004)



아동학대 예방교육

생활에 힘을 싣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아동학대의 개념

가.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만 18세 이상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에 적용되어 처리

나.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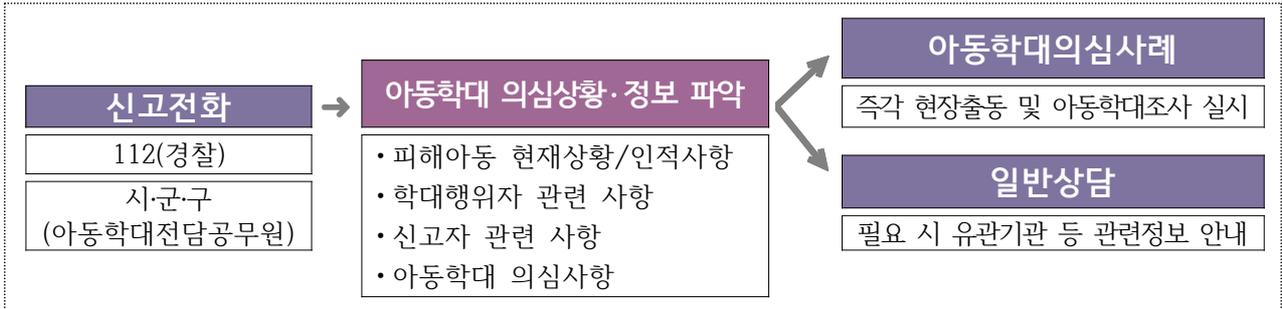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콜 앱)
- 보건복지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안(교사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절차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확인
- (도교육청) 교사 대상 아동학대 사안 관련 교육감 의견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

4 징계권 폐지 안내

가.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나. 징계권 폐지 시기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학부모님, 도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접근성이 높아져, SNS를 통한 불법 도박광고 및 홍보문자가 무분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할 백신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친구들과 돈 거래가 잦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선물 등)을 자주 사주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는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가정 내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



금전동기

쉽게 큰 돈을 따고 싶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



흥분동기

스릴과 흥분, 짜릿함,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



회피동기

현실 문제의 압박감, 우울감,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욕구



사교동기

직장 동료나 주위 친구들과 놀이 및 친목의 욕구



유희동기

가벼운 즐거움과 여가를 즐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욕구

2 우리 아이들이 도박문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 도박행동 자가점검 선별척도를 통해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gp.or.kr/> 접속 또는 자가점검 바로가기



□ 우리 아이들의 도박행동 자가점검 후 점수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비문제 수준
(0~1점)**

도박문제는 없어요.
만약 도박을 자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 수준
(2~5점)**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중단해요.**

**문제 수준
(6점 이상)**

도박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전화해요.**



헬프라인 1336은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번호 (연중무휴)입니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지인들은 국번없이 1336으로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감염병 예방 기본 원칙

- ▶ (개인위생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창문개방 환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 면역향상을 위한 노력
- ▶ (유증상자 관리) 법정 감염병 또는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휴식, 등교 여부 상의
- ▶ (교내 확산방지) 감염병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등교 중지하여 교내 확산 방지

2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가.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① 의심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 후 담임 선생님께 연락
- ② 가정에서 휴식(등교중지 - 전염 예방을 위해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PC방, 오락실 등)도 가지 말 것)
- ③ 완치 후 **병명과 격리기간, 등교중지 사유가 명시된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를 학교로 제출(해당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됨)

나.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과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
- 학령기에 걸리기 쉬운 감염병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 및 질병 상황 변화 가능)

병명	증상	등교 중지 기간(의사 소견에 따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4일 후 까지
수두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가려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 밑이 부어오름	증상 발생 후 발현 5일까지
독감(인플루엔자)	고열, 근육통, 기침, 콧물 등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할 때까지 발열 없는 경우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 경과해야함) (의사 소견에 따름)
A형간염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복통, 황달	황달 증상 이후 7일간(황달증상 없으면 입원일로부터 7일간)
결핵	2주 이상 기침, 가래, 미열, 피로, 식욕부진	약물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 소견에 따름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생활에 힘을 싣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성폭력 예방

가. 가정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 1) 신체의 구조와 차이 등 성에 대해 자녀와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 2)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 3)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다면 바로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 4)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 5) 성폭력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6) ‘아는 사람’ 이라도 조심하도록 합니다. (성폭력은 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

-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올 때 싫으면 ‘싫어.’, ‘안 돼.’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다른 사람의 경계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허락)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수칙

- 1) 아동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수칙(7가지)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폭력 예방 안전수칙(7가지)
 -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줍니다.
 -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처: 교육부 누리집 [카드뉴스]>

※ 양육자 콘텐츠 참조: 디클DIGITAL CLEAN(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2 디지털 성폭력 예방

가. 디지털 성폭력이란?

▶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습니다.

나. 디지털 성폭력 & 성매매 대처방안

1) 성폭력 & 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가 피해자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구분 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디지털 성폭력 유형

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

(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여 성적으로 이용)

다.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들을 알려주세요.

- ▶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몸 사진 혹은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려고 할 때
- ▶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체 사진을 누군가와 공유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협박받을 때
- ▶ 누군가가 나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고, 내가 그것에 압박감을 느낄 때
- ▶ 누군가가 나에게 성관계에 대해 말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할 때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학교, 사는 곳, 메신저 ID)나 나의 사진/영상을 보내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세요.

4. 성매매 예방을 위한 어른들의 할 일

- 인터넷 성매매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기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3 양성평등

가. 성인지 감수성

자두 아빠: “자두야, 밖에서 놀 땀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한복집 할머니: “(자두야)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다.”

자두: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 잘해도 못 생기면 결혼도 못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예쁘게 낳아줬으면 됐잖아!”

- <안녕 자두야> 중에서 -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1)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

- 성인지 감수성은 ‘사람을 여성과 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의 의식으로 의식은 인간의 행동과 언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 성평등 지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105위입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소극적 의미로는 성 차별이나 성 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에 대한 ‘인지 능력’ 혹은 ‘관심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의 적극적 의미는 성 차별이나 성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와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실행력을 포함합니다.

2)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법

-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성 고정관념을 성찰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일상 속에서 성 불평등 단어의 인식 및 개선 노력을 합니다.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 성평등 관련 책, 기사, 연수, 대화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합니다.
-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불리하지 않은 지 각 성의 입장에서 함께 판단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합니다.
-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여성 혐오와 차별중심 접근을 극복, 각 성의 입장에서 보는 균형잡힌 시선을 갖는 노력을 합니다.

나.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 인식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낮은 사람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성에 대한 태도가 높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달라,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 - 집안일과 육아 등에서 남성,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책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해 다소 둔감,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의 권한을 더 높게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와 육아 등 공동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 요리, 빨래, 청소와 아이 돌보기 등의 활동을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 가정 내 성 차이를 인정, 부부 상호 간의 권한 관계에서도 평등성을 지향

다. 가정에서의 성 평등 실천

- 1)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2)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3)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4) 진로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5)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6)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7)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8)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교육

생활에 힘을 실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흡연 예방 교육

가. 간접흡연

- 1)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
- 2)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함
- 3)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 붙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함
- 4)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남

나. 담배,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해롭다

- 1)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니코틴에 더 민감하고 의존성도 빨리 생기며, 청소년의 뇌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 최근 담배회사들이 내세우는 ‘위험 감소’, ‘냄새 없는’, ‘연기 없는’, ‘깨끗한 대안’ 등의 담배 제품은 교묘한 담배 산업전략의 예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 3)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시기의 흡연을 적극 차단하여야 함

다. 담배 없는 학교를 위한 가정의 역할

- 1) 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가족 내 흡연자가 있다면 자녀가 담배를 경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2) 금연은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 금연에 이르는 흡연자는 3%에 불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1544-9030)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세요.(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검색)

※ 참고 사항

• 학교 내 금연 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2 마약 예방 교육

가.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 증가

- 1)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 2) 마약류를 거래할 때 특정 장소나 사람을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SNS로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
- 3) 마약류와 관련된 자극적 용어와 영상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는 사례 증가

나. 마약류로 인한 피해 및 범죄 연루 위험성

- 1) 성장기 청소년들은 마약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 (기억력 및 사고능력 저하, 공격적 성향, 거짓말, 발달장애 등)
- 2) 청소년기는 또래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범죄 연루 위험성도 증가
- 3)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4) 간단한 일인데, 무료 관광이나 과도한 금품 등을 제안한다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5)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음료, 물, 사탕, 과자 등 모든 음식을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 철저한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 1)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 2) 자녀들이 마약류에 노출되거나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교육기관



☑ 한국마약퇴치본부

: 1899-0893

- 전국 13개 지역 시도지부 방문, 편지, 메일, 전화상담 가능
- 의료기관 치료 연계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

: <https://schoolhealth.kr>

입원, 외래 치료 및 상담기관



☑ 지역사회 내 치료보호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범죄 신고기관

☑ 경찰: 112

☑ 검찰: 1301

☑ 관세청: 125

※ 상담, 교육 및 치료 기관에서 상담 시 모든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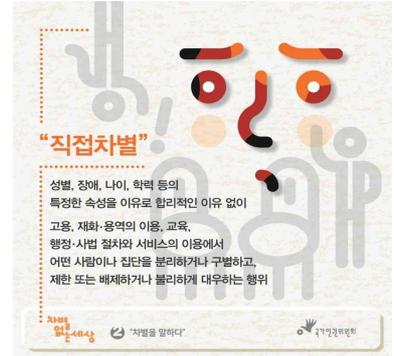
-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반대하기 -

생활에 힘을 실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나요?

▷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면 안 됩니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 4. 11 시행)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차별금지대상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안내

생활에 힘을 실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2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사례

◆ 킥보드 사망 사고 느는데... 안전불감증 여전 (KBS뉴스, 2023. 09. 07.)

◆ 킥보드 피하러다 화물차 전복됐는데... 안 멈추고 '쌩' (SBS뉴스 외 다수, 2023. 10. 11.)

3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 소지

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연령 16세

취득 연령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 절대 금지

보호자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

범칙금 ◆ 무면허 탑승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인도주행 위반 3만원 등

4 학교 교통안전교육 현황

◆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합니다.

◆ 지도내용: 통학로 알기,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법규 알기,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방법 등



정보통신윤리교육

생활에 힘을 실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인터넷중독예방

■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 컴퓨터 사용시간 가족들과 협의결정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 알람시계로 사용시간 수시확인
-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리기
-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 시간을 어기지 않기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3 스마트폰 중독 예방

- 스마트폰 중독이란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4 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

■ 사이버 (언어)폭력 유형

최신 유형	설명
SNS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들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들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사이버 언어폭력 대처방안 >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8.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이버중독 예방 및 유해정보 차단 관련 사이트

분야	주요내용	관련기관(사이트주소)
사이버중독 상담 관련	•인터넷 사용조절 및 과다사용 관련 상담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https://www.iapc.or.kr/
유해정보 차단 관련	•중독 상담 관리 및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사이버안심존(스마트안심드림) https://ss.moiba.or.kr/index.do
	•불법 유해 정보 차단 SW 보급	▶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학교 상담실 운영 안내

생활에 힘을 실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학교상담실 소개

1. 학교 상담실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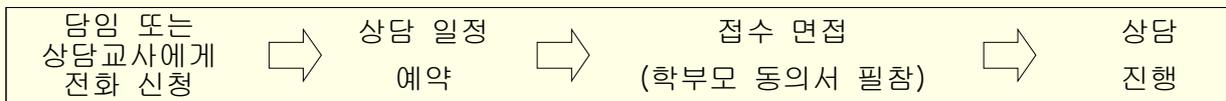
▷ 상담실은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을 통해 학교 혹은 가정에서 겪는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자,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학생들의 마음 쉼터입니다. 상담은 자녀들 마음의 힘을 키워내는 활동입니다. 상담 과정 중 학생들은 스스로 생활상 어려움에 대해 성찰해보고, 이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전주송천초등학교 상담실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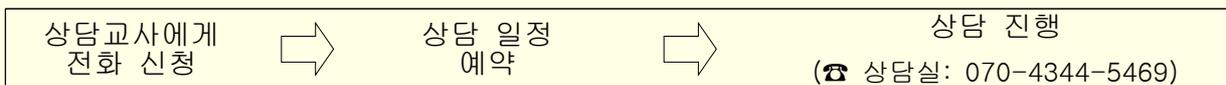
- ▷ 위치: 본교 서관 3층
- ▷ 이용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 운영목적
 -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을 통하여 개인 내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 예방적 활동과 문제행동의 초기 개입을 통해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켜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도우며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3. 학생상담 의뢰신청 및 학부모 상담 신청 방법

■ 학생상담 의뢰신청



■ 학부모 상담 신청



※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노출한 사적인 정보를 전문적 개입의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아야함을 의미합니다.

(단,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이 지켜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가능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 범죄와 연루된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등)

2 상담활동 및 프로그램 안내

1. 개인상담

가. 학생상담

- 1) 대인관계, 우울, 불안 등의 호소문제로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 위한 개인상담
- 2) 전입생의 학교적응과 등교거부 등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인상담
- 3)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 교장, 교감선생님의 의뢰로 상담이 요청될 경우의 의뢰상담
- 4) 긴급위기상담

자신이나 타인의 목숨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의 성희롱 혹은 성폭력과 관련된 경우,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청소년의 비행 및 가출과 관련된 경우, 학생의 정서가 불안하여 수업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

나. 학부모상담

- 1) 자녀 관련 상담 요청 시 혹은 의뢰 상담 중 필요시 학부모 상담 실시

다. 학생상담의뢰 시 자문 상담

- 1) 학생 관련 상담 요청 시 혹은 의뢰 상담 중 필요시 교사 대상 상담 실시

라.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 1)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표준화검사	투사검사
TCI(기질 및 성격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등	SCT(문장완성검사), HTP(집-나무-사람 검사), KFD(동적가족화) 등

2. 집단상담

가. 8~12명의 집단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이나 인간적 성장을 추구하는 상담 활동

나. 유형: 소그룹 집단상담 / 학급단위 집단상담 운영

다. 대상 및 주제: 3~6학년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정서 조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 대상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형	주제	내용
소그룹 집단상담	관계 증진 및 스트레스 감소	1) 목 적: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움 2) 운영기간: 상시운영 / 방과후시간 활용 3) 대 상: 희망학생 및 의뢰학생 10명 내외 4) 신청방법: 프로그램 안내 시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
학급단위 집단상담	사회성 함양	1) 목 적: 자기이해 및 수용을 통한 다른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 2) 운영기간: 상시운영 3) 대 상: 3~6학년 4) 신청방법: 학급 별 상황에 따라 담임교사가 신청 후 진행
	동기 강화	
	공동체 의식 증진	
	자아존중감 향상	

3. 상담교육

가. 상담실 인식 개선 교육

- 1) 목적: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학교 내 위기학생을 위한 안전망 구축
- 2) 대상: 전교생
- 3) 기간: 2024. 03월 중

나. 심리정서교육 프로그램

- 1) 목적
 - (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심리 정서 교육 활동 진행
 - (나) 학급 내 학생 간 관계 파악 및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개입
 - (다) 상담교사-학생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한 상담실 문턱 낮추기
- 2) 대상: 3~6학년
- 3) 기간: 학기 중 운영

다. 또래상담교육

- 목적: 타인 감정 조망 능력 향상 및 남을 돕는 봉사 정신 함양
- 대상: 5~6학년 희망 학생
- 운영기간: 4~7월, 9~12월 운영 예정
- 또래상담자 역할
 - 교내 혹은 학급 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 시 상담실 소개 및 연계
 - 학급 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돕는 친구의 역할 수행

4. 지역사회 유관기관 안내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전주교육지원청 덕진Wee센터	진북초등학교 후관 1층	063)253-9214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산구 용머리로94 좋은빌딩(3층)	063)236-1388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전주스마트심센터	완산구 현무2길 25(1층)	063)288-8495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완산구 서신로61(1층)	063)231-0182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나눔동지타운 407호	251-0650~1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273-6996	

3 상담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1 상담은 보통 몇 번이나 하나요?

보통 학생 상담의 경우 담임교사나 학부모님에 의해 의뢰된 비자발적 상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상담을 하려는 동기가 아직 생기기 전이므로 보통 5-6회기 이상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횟수는 담임교사 및 학부모님과 상의 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담은 보통 언제 하나요?

수업시간 외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다만, 긴급 사안 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시간 내 신속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 및 담임교사 협의하에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전(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합니다.

3 상담선생님과 상담한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아니요. 생활기록부에 학생 및 학부모님과 상담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 진행 확인 및 추후 계획 수립을 위해 상담 일지(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상담교사의 공책, 담임교사의 교무일지와 비슷합니다.)에 기록되며, 상담내용에 대해 한글 파일에 암호화하여 보관합니다. 학생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웹상에 기록되지 않으며, 학생 및 학부모님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4 상담교사와의 상담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저는 상담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한 번에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님과 담임교사 그리고 상담교사인 제가 함께 학생이 보다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돕는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천천히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문제 있는 학생들만 상담하는 것 아닌가요?

맞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누구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고민거리 하나쯤은 1학년도, 6학년도 그리고 성인인 저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에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자기 이해를 촉진하며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 상담도 존재합니다. 조금 다친 친구도 크게 아픈 친구도 갑자기 아픈 친구 모두가 보건실에 갈 수 있듯 상담실도 작은 고민을 가진 친구, 큰 고민을 가진 친구, 갑자기 고민이 생긴 친구 등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영양교육

생활에 힘을 실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학교급식 운영

- 가. 우리 학교는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전체 무상 급식을 실시합니다.
- 나. 전라북도에서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비**를 지원받아 전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우수가공품을 사용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친환경 지원금	바이제품	합계
식품비	운영비	계			
2,940원	400원	3,340원	350원	40	3,730원

- 다. 학교급식법령의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영양 정보를 공개합니다. 표시사항으로 **월간식단,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정보, 식단 사진 및 다양한 영양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식단에 사용된 식재료 중 알레르기 대표 유발 식품 19가지를 표기하오니 알레르기의 진단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은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하여 교육부지침에 의거 나트륨 저감화(매일 식단 국의 염도 계 측정으로 균일한 염도(염도 0.6~0.7%의 국 제공), 당류 저감화를 실천합니다.
- 마. 철저한 식품 검수 및 위생관리시스템(HACCP)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바.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으며 다시마, 멸치 등의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계절에 맞는 전통 음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 사. 한우(2등급 이상), 돼지고기(국내산 1등급 이상), 닭고기(국내산 1등급), 오리고기와 그 가공품 등은 국내산을 원칙으로 사용합니다.

2 영양교육

가. 목표

- 1) 균형된 영양급식으로 심신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도모한다.
- 2)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도덕적인 태도를 함양시킨다.
- 3) 식사예절과 올바른 식생활의 습관을 함양시킨다.
- 4)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식량의 생산배분 소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나. 운영방침

- 1) 일상생활에 대해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영양 지식과 위생 지식을 주어 좋은 식생활 태도를 육성한다.
- 2) 기본 영양에 힘쓴다.
- 3) 식사에절지도에 힘쓴다.
- 4) 균형된 식단을 구성하여 체질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 5) 교과 및 일상생활에 관련지어 지도한다.
- 6) 식생활관의 위생적인 관리에 힘쓰며 식생활관의 외인 출입을 금한다.
- 7) 학교급식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급식 방법을 연구 개선해 나간다.
- 8) 학교급식을 가정과 직결시키기 위하여 학부모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

다. 추진 내용

- 1) 영양교육은 급식 위생 지도나 학교행사에 관련지어 지도한다.
- 2) 급식 홍보지 통하여 실시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한다.
- 3) 학교 홈페이지 및 급식관리실에 '영양상담실'을 운영 관리한다.
- 4)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식단에 대하여 '영양표시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및 학교외의 식사에서도 올바른 식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월간교육계획

구분	영양교육내용	비고	
교육방법	가정통신문 발송, 본교 홈페이지 이용, 현장지도, 수업		
교육내용	3월	학교급식 안내	
	4월	식품알레르기의 이해,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알아보기	
	5월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환경보호	
	6월	6월 절기(단오), 식중독 예방과 장염비브리오	
	7월	비만관리 및 예방법, 어린이기호식품(고카페인 음료) 줄이기	
	8월	나트륨, 당류(불량식품) 줄이기	
	9월	9월 절기(백로,추분,추석),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	
	10월	나트륨 줄이기, 가공식품 구입요령	
	11월	11월 절기(입동), 편식예방	
	12월	김장철 김치의 영양 및 발효식품	

※ 교육내용은 월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나이스플러스 안내

가. 나이스플러스 제공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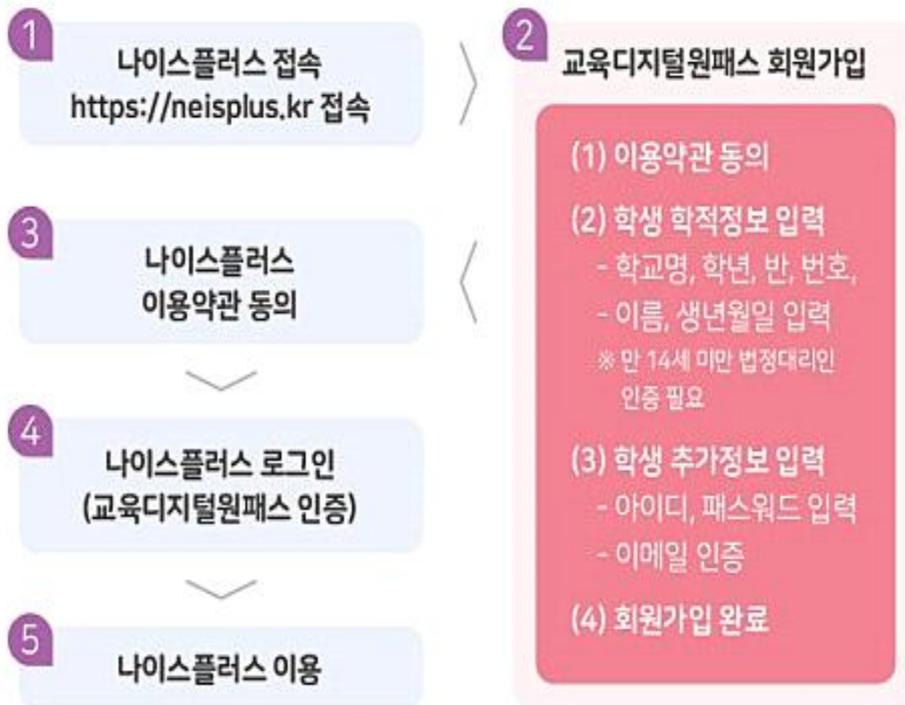
- 기존의 대국민 학생서비스가 나이스플러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구성한 수업에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플러스는 다양한 학교생활참여 및 학습결과를 확인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 주요 내용

- 다양한 정보기기(PC, 태블릿, 모바일)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수업 참여, 학교생활기록, 출결, 성적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강신청(고등학교), 웹 오피스를 이용한 과제 작성 및 제출, 오답노트 작성 등이 가능합니다.

다. 나이스플러스 이용 절차

- 학생은 나이스플러스(<https://neisplus.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소속학교 정보 인증을 통해 교육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및 나이스플러스 이용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디지털원패스(<https://edupass.neisplus.kr>)란 교사와 학생은 하나의 아이디로 공공 및 민간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그인 인증수단입니다. 본인인증이 불가한 학생 등을 지원하여 간편하게 학생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계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안내

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제공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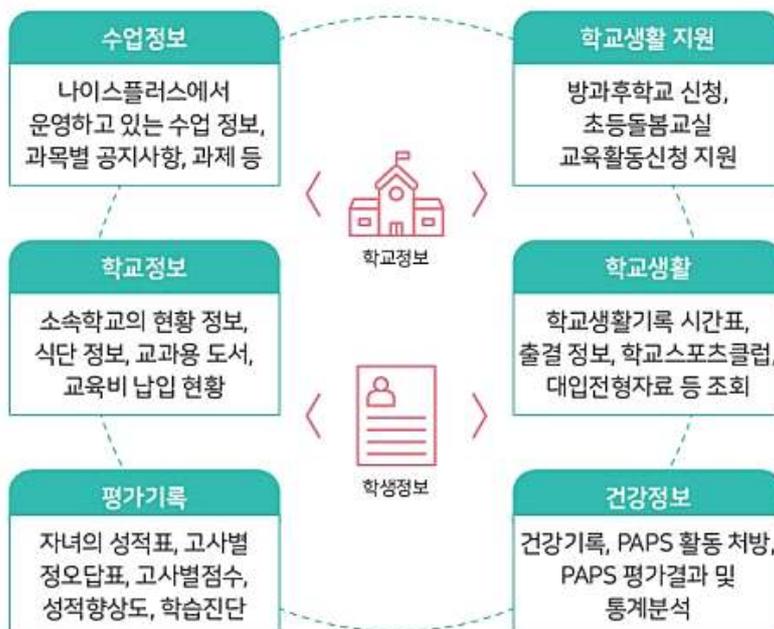
-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바일로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학부모서비스는 방과후학교 신청 등 자녀의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메인화면

나. 주요 내용

- 학부모서비스는 자녀의 수업 정보 및 학교생활 정보를 다양한 기계(PC, 모바일)를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절차



※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해온 학부모님께서 기존 서비스에서 사용하였던 계정으로 학부모서비스의 약관 동의 후 등록된 자녀 정보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진로 교육

생활에 힘을 신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꿈이 많은 아이 진로 계획으로 꿈 가꾸기

초등학교 시기에는 BTS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며 프로그래머를 꿈꾸기도 합니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이 많은 자녀가 흥미를 잃지 않으며 진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여러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하는 과정속에서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초등학생 자녀는 변화 가능성이 많아요.

초등학교 기간은 직업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해 주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한 직업이나 분야를 고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선호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넓은 진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여러 직업을 알지 못해 꿈꾸는 직업이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충분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하거나 흥미 있어 하는 한 분야만 깊게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됩니다.

3. 다양한 자극으로 꿈을 키워 주세요.

초등학교는 변화의 시기인 만큼 다양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알아보고 체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관점과 시야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말한 장래희망이 탐탁지 않아 화를 낸다면 자녀가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진로의 방향성을 미리 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서적이나 체험관, 웹사이트를 참고하고, 진로성숙도를 높여 주는 위인전을 많이 접하면 직업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드림레터 활용 안내

드림레터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로 자녀의 진로지도에 필요한 진로지도 방법, 학교 진로교육 정보, 자녀 진로상담 사례, 체험 정보, 다양한 직업 및 학과 정보를 담아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진로소식지입니다.

다양한 진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제공하는 소식지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된 URL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발간된 소식지를 볼 수 있습니다^^

< 학부모용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URL >

<https://www.career.go.kr>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 진로교육자료 - 드림레터



출결 관리 안내

생활에 힘을 실는
생동하는 송천교육

1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15일)

나.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종이문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전자화문서(하이클레스)

2 출석 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결석신고서 제출 (양식은 하이클레스, 학교홈페이지)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결석신고서 + 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다. 기저질환, 만성질환, 가슴기피해 관련성이 있는 결석

: ①결석신고서 + ②의사진단서(소견서)(학기초 1회 진단서 제출로 같음)

4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라.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등)

5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같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